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3.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2년 3월 10일
- 나. 발 의 자: 김길자 의원 외 4명
- 다. 회부일자: 2022년 3월 18일
- 라. 상정일자: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2. 3. 21.)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길자 의원)

- 가. 제안이유
  -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 위임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명시 (안 제1조)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주기 규정 (안 제5조)
  -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 확산을 위한 표창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원배)

#### ○ 본 조례안은

-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위임 근거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하였음. 이는 장기요양요원의 현황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에서는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 확산을 위하여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종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장기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으로 하여금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6
----------	-----

발의년월일: 2022년 3월 일

발 의 자: 김길자 의원 외 3명

## 1. 제안이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위임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명시 (안 제1조)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주기 규정 (안 제5조)

다.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 확산을 위한 표창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

## 3. 개정안 :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2. 3. 8. ~ 3. 14.):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 따라”로, “장기요양기관”을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를 “3년마다”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조례」에 따른다.

1.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u>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장기요양기관</u>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u>필요한 경우</u>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u>실시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u>&lt;신설&gt;</u></p>	<p>제1조(목적) -- <u>조례</u>는 「<u>노인장기요양보험법</u>」 제4조제5항에 따라 ----- <u>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u> ----- -----.</p> <p>제5조(실태조사) ① ----- ----- ----- <u>3년마다</u> ----- ----- ----- <u>실시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표창) 구청장은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u>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u>」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u></li> <li>2. <u>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u></li> <li>3. <u>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u></li> </ol>

제9조 (생 략)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  
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